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93호
2023. 7. 26.(수)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82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88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6
제88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9
제882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12
제8830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883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8832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9
제883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88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88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88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837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 책무) ① 교육감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협약 등에서 규정한 역할 및 권한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 등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전문가 제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

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및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 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 사유
6. 민간전문가의 업무 실적 및 성과의 평가
7. 그 밖에 교육감이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고도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투명성 및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을 한 사람 중 제6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평가 및 위촉기간 연장)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촉기간 내의 업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 및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2조(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역할 및 업무 수행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행·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법령 및 자치 법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있는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용 중에 있음.
- 나.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자문료를 지급받은 민간전문가 명단을 보면 교육감과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 게다가 특정 민간전문가에게 장기간 반복해서 자문료를 지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으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문성과를 인정받아 재위촉되는 것인지 불분명했음.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민간전문가 자문성과 자료를 보면 각각의 전문가가 담당했던 자문내용만 설명되어 있을 뿐, 측정 가능한 계량화된 수치로 자문 성과를 적어서 제출한 사례는 전무했음.
- 라. 이에 서울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민간전문가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
- 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요건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다.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에 대해 규정함(제9조)
- 라. 민간전문가의 업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폭행

나.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 같은 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및 중복 민원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중대한 폭언·폭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3.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속한 분리
4. 민원인이 제제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 등을 반복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유와 피해회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제3조).
- 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대해 규정함(제4조, 안 제5조).
- 다.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소속 부서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안제7조).
- 라.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물”이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물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그 소요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비율
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이 제6조제3항의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정의무비율인 1%이상 구매해야 함
- 나.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년 0.87%(본청 1.2%, 지원청 0.77%), 2021년 0.78%(본청 1.24%, 지원청 0.65%), 2022년 0.62%(본청 0.77%, 지원청 0.58%) 등 최근 3년동안 법정의무비율인 1% 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다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업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사항과 법정의무비율 등 특별법의 목적 달성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 라.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기회 확대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용어 정의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5조)
-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에 관한 사항 (제7조)
- 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
- 사. 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2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듈러교실 설치가 필요한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로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운송 및 단순 조립을 통해 축조한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노후된 학교의 리모델링, 증개축 공사 수행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유동적·발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라. 모듈러교실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0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강서양천교육지원청(64교)의 양천구(30교) 위치란 중 “절골8길 33”을 “남부순환로83길 44”로 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55교)의 강남구(33교)위치란 중 “영동대로3길 45”를 “삼성로4길 30”으로 하며, 같은 표 구분란 중 “성북교육지원청(37교)”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37교)”로 하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37교)의 성북구(24교) 위치란 중 “성북구 서경로8길 28-15”을 “성북구 길음로15길 55”로, “성북구 인촌로7가길 39”을 “성북구 고려대로7가길 39”로 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64교)	양천구 (30교)	서울신남초등학교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4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55교)	강남구 (33교)	서울개포초등학교	강남구 삼성로4길 30
성북강북교육지원청 (37교)	성북구 (24교)	서울길원초등학교	성북구 길음로15길 55
		서울안암초등학교	성북구 고려대로7가길 39

별표 3의 표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명칭란 중 “서울전자고등학교”를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한다.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118교)	강남서초 (12교)	서초구 (6교)	서울웹툰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서초구 과천대로 852-23

별표 7 구분란 중 “북부교육지원청(30교)”를 “북부교육지원청(31교)”로, 자치구명란 중 “노원구(19교)”를 “노원구(20교)”로 하고, 같은 표 위치란 중 “노원구 동일로 231길 24”를 “노원구 동일로 231길 26”으로 하고, 명칭란 중 “서울공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신설하고, 위치란 중 “노원구 동일로 192가길 16” 다음에 “노원구 월계로45가길 10”을 신설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29교)의 강남구(18교) 위치란 중 “강남구 영동대로3길 45”를 “강남구 삼성로4길 20”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23교)의 성북구(16교) 위치란 중 “성북구 서경로8길 28 - 15”을 “성북구 길음로 15길 55”로 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북부교육지원청 (31교)	노원구 (20교)	서울노일유치원	노원구 동일로 231길 26
		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원구 월계로45가길 1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9교)	강남구 (18교)	서울개포유치원	강남구 삼성로4길 20
성북강북교육지원청 (23교)	성북구 (16교)	서울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북구 길음로15길 5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교육지원청 구분 정정(별표1 성북교육지원청, 별표3 지역교육청)
- 나. 유치원 3개원(서울개포유치원 외 2개원), 초등학교 4개교(서울개포초등학교 외 3개교) 주소 정정
- 다. 2023. 9. 1.자 고등학교 1개교(서울전자고등학교) 교명 변경
- 라. 2023. 9. 1.자 병설유치원 1개원(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구분 및 위치 (별표 1)

- ☐ 구분 정정: 1개청
 - 성북교육지원청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 주소 정정: 4개교
 - 서울신남초등학교: 양천구 절골8길 33 →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44
 - 서울개포초등학교: 강남구 영동대로3길 45 → 강남구 삼성로4길 30
 - 서울길원초등학교: 성북구 서경로8길 28 - 15 → 성북구 길음로15길 55
 - 서울안암초등학교: 성북구 인촌로7가길 39 → 성북구 고려대로7가길 39

다. 고등학교 명칭 (별표 3)

- ☐ 구분 정정: 1개청
 - 지역교육청 → 교육지원청
- ☐ 교명 변경: 1개교
 - 서울전자고등학교 →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

라. 유치원 명칭 및 위치 (별표 7)

- ☐ 신설: 1개원
 - 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노원구 월계로45가길 10)
- ☐ 주소 정정: 3개원
 - 서울노일유치원: 노원구 동일로 231길 24 → 노원구 동일로 231길 26
 - 서울개포유치원: 강남구 영동대로3길 45 → 강남구 삼성로4길 20
 - 서울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북구 서경로8길 28 - 15
→ 성북구 길음로15길 55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58조제1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8조제4항”을 “영 제58조제4항제1호”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4조제3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와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선출관리위원회 정수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 2년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졸업”을 “졸업·수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졸업한”을 “졸업·수료한”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결위된”을 “공석이 생겼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개의회”를 “회의를 시작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 나.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소규모학교와 각종학교 선출관리위원회 운영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위탁형 각종학교 운영위원의 임기를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마. 위탁형 각종학교 학부모위원 임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바. 연간 회의 개최 의무규정을 학교별 상황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사. 기타 상위법령의 조항 및 자구를 정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2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미래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 2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 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
 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지정·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 3.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4.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1.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
- 2.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자치구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외협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시교육청의 ‘ 혁신교육지구 사업 ’ 이 종료되고, 새롭게 ‘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 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 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4조)
- 다. 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제7조~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학교장 및 학부모는 학생들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탓에 등하교 및 야외 활동 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잦고 돌발행동도 많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유아 등의 야외 활동 시 형광조끼 및 반사용품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다. 이에 교육감이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10조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피해신고 등)”을 “(학교폭력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관, 단체 및 개”를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유형과 양상이 흉포해지는 등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함. 특히 피해 학생은 자해를 시도하고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나. 따라서 신고의무를 강조하고,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제목을 ‘ 피해신고 등 ’에서 ‘ 학교폭력 신고의무 ’로 변경하고 직무상 신고의무가 있는 자를 명시하여 신고의무를 강조함(제8조의2)

나.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제1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코로나19 이후 실내공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실내 공기질관리 범위에 미세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넘어 전염성 바이러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나.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다. 이에,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7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를 변경 및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부과·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 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제26조제5항제10호)

2.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 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제26조제5항제10호)

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을 명시함(제28조제3항)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